

	신문방송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23
		제정일자	2006.03.01.
		개정일자	2019.08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 (신문방송국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신문방송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기관인 신문방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
1. 대학 신문방송국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 신문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대학 신문방송국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당연직 위원: 신문방송국장, 학생취업지원처장
2. 위촉 위원: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5인 이내

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신문방송국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신문방송국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